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선거·정당·정치자금법)

2005.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 례

Ⅰ. 제출배경 1

Ⅱ. 작성방향 2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정당법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Ⅲ. 개정의견 주요내용 5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5

1. 선거운동 규제 완화 / 5

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확대

나. 거리 인사 등 허용범위 확대

다. 각종 집회 등의 개최 제한 완화

라. 선거홍보물 등의 학력 게재요건 완화

마. 선전벽보를 홍보용 현수막으로 대체

2.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확대 / 7

3.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 7

가.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 허용

다.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완화

라. 인터넷실명제 완화

마. 입후보예정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유권자의 참여 확대 8

1.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 8

2.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 9

3. 부재자신고 대상자 확대 / 9

정책선거 구현 9

1. 매세대 정책공약집 발송 / 9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활성화 / 9

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나.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선거 확대

다. 초청대상 후보자의 불참시 방송 고지제도 도입

라.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발언기회 부여

선거공영제의 실효성 확보 11

1. 선거비용 보전 상한선 제시 / 11

2.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 대한 기탁금·보전비용 환수 / 11

절차사무 등의 합리적 개선 11

1. 선거인명부·후보자등록 분야 / 11

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나. 납세·체납 증명서 제출 범위 조정

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시기 조정 등

2. 투표 분야 / 13

가. 투표용지 작성방법 개선

나. 투표용지 인쇄 등에 정당추천위원 입회

다. 거소투표에 한하여 속봉투 사용

라. 동시선거시 정당선정 투표참관인수 축소

마. 투표함 등의 봉인절차 간소화

3. 개표 분야 / 14

가.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읍·면·동단위 개표 허용

나. 집계사무 담당 개표사무원 자격제한 폐지

다. 중복기표된 투표의 무효범위 축소

4. 기타 분야 / 14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다. 예비후보자 관련 등록무효규정 보완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행위의 합리적 조정

마. 공소시효규정 보완

바. 선거관리사제도 도입

사. 위장전입 기간 삭제

2 정당법

정책정당으로의 발전지원 18

1. 정당의 정책토론회 의무화 / 18

2.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 18

3.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수의 합리적 조정 / 18

정당사무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19

1. 경선불복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명확화 / 19

2. 정당사무절차의 합리적 개선 / 19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 21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 21

2.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 / 21

3. 소액 정치자금 기탁촉진을 위한 홍보의무 부여 / 2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22

1. 당비납부 상한제도 도입 / 22

2. 회계보고내역 공개방법의 다양화 / 22

3. 기탁금 반환금과 보전비용의 사적 사용규제 / 22

4. 후원회 해산 등의 경우 잔여재산의 합리적 처분 / 23

5. 후원금의 사용용도 제한 / 23

6.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의 통제강화 / 24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 24

1.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 도입 / 24

2.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지급방법 개선 / 24

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의무화 등 / 24

4. 경상보조금 등의 사용용도 확대 / 25

정치자금사무절차의 합리적 개선 25

1.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의 개선 / 25

2. 기탁금,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명확화 / 25

3. 정치자금 사무절차의 합리적 개선 / 25

Ⅰ. 제 출 배 경

○ 지난 2004. 3. 12 개정된 정치관계법은 반세기에 걸쳐 우리 선거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던 사전선거운동의 금지를 일부 완화하여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 정경유착과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온상이 되어왔던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면서 돈 먹는 하마로 불리어 왔던 지구당을 폐지하고 세과시용 군중동원선거운동을 금지시켜 정치자금의 수요처를 대폭 줄이면서 정치자금의 소액 다수에 의한 조달과 그 지출통로를 투명하게 하는 등 1994. 3. 16 통합선거법 제정이후 가장 진전된 변화를 보였으며,

○ 이 제도를 적용하여 처음 치른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돈 선거를 차단해 냄으로써 역대 선거중 가장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치관계법은 정치부패와 그로 인한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과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치중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정치자금의 조달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우리위원회는 돈 안드는 선거, 투명한 정치자금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면서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과정을 포함하여 1년여 동안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정치관계법을 개선·보완하여 성숙된 선진정치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기틀로 삼고자 이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것임.

Ⅱ. 작 성 방 향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첫째, 후보자의 선거운동자유 확대를 위하여 어깨띠 등 소품이용, 거리에서의 인사, 향우회·동창회 등의 각종 집회개최, 유사학력게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후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전벽보 대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도록 함.

둘째, 유권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선거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거주자의 부재자투표를 허용함과 동시에 국내 부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직업상 선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셋째, 정책선거 구현을 위하여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을 1종의 정책공약집으로 통합하고, 선거방송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선하며, 초청대상 후보자가 불참하는 경우 이를 대담·토론회 개시 직전에 방송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함.

넷째,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도안료 등 통상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상한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목적으로 사직한 자 등 보궐선거등의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환수하도록 함.

다섯째, 절차사무를 간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없는 선거인명부 공람제도를 인터넷 열람제도로 대체하고, 투표용지 인쇄·납품·송부 과정에서의 정당대리인 입회제도를 정당추천 선관위위원 입회제도로 대체하며, 읍·면·동단위의 개표를 할 수 있도록 함.

2 정당법

첫째,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둘째,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시·도당의 기능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늘리고, 공직선거의 입후보가 금지되는 당내 경선의 낙선자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의 의미와 입후보가 금지되는 공직선거의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 선거자금 조달을 위한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을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영수증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둘째,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내역의 공개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천등과 관련한 고액당비 납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비납부 상한제도를 도입하며, 후원금 등으로 지출한 기탁금·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때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의 잔여재산 등의 합리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함.

셋째, 국고보조금의 배분과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대한 안정적·정기적 지원을 위하여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지급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함.

넷째, 후원회의 금품모집광고의 횟수를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고, 회계서류의 보존 등 정치자금의 회계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Ⅲ. 개정의견 주요내용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1. 선거운동 규제 완화

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 확대

○ 후보자 이외에 후보자의 가족과 선거사무관계자도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규격 범위안의 표지판(피켓)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후보자는 제작수량·제작처·소요비용 등을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제작한 소품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받은 자는 자신이 지니거나 자신의 자동차·주택 또는 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거리인사 등 허용범위 확대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는 2인(후보자 포함시 5인)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인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모자·옷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각종 집회 등의 개최 제한 완화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의 전면 개최금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이들의 배우자와 관계 있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가 개최하는 모임
- 후보자등이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하거나 후보자등이 참석하는 모임
-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모임

라. 선거홍보물 등의 학력 게재요건 완화

선거홍보물 등에 최종정규학력을 게재하면 과정명·수학기간을 명기한 유사학력도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아닌 제한규정위반죄로 처벌하도록 함.

마. 선전벽보를 홍보용 현수막으로 대체

○ 선전벽보 대신 선거분위기를 살리고 후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성명·사진·정견·정책 기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2m×1m이내 규격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후보자는 현수막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받은 후 읍·면·동마다 10매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읍·면·동마다 5매 이내에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 예비후보자도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역구내 등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명함배부장소 제한을 풀며,

○ 우편으로만 발송하도록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은 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호별로 투입하는 등 자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

3.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

가. 인터넷언론사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인터넷언론사도 방송사·일반일간신문사 등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도록 함.

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 허용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명칭과 그 비용

등을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선거운동정보 전송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전송할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과 수신거부의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도록 함.

라. 인터넷실명제 완화

정당·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가 발급하는 아이디(ID)를 기록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입후보예정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전이라도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나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유권자의 참여 확대

1. 선거권 연령의 하향 조정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2. 국외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외교관·유학생·상사주재원 등 국외 거주 선거인에게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3. 부재자신고 대상자 확대

직업상·업무상의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선거인은 그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정책선거 구현

1. 매세대 정책공약집 발송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은 그 내용이 유사하고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3일 간격으로 연이어서 매세대에 발송되어 홍보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1종으로 통합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집으로 매세대에 발송하되, 유권자가 쉽게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 기타 공공장소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함.

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활성화

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위원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언론관련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개선함.

나.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선거 확대

기초자치단체장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회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초청대상 후보자 불참시 방송 고지제도 도입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대담·토론회 개시 직전에 방송고지하도록 하여 빠짐없는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담·토론회가 활성화되도록 함.

라.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발언기회 부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으로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말미에 연설등 발언의 기회를 주도록 함.

선거공영제의 실효성 확보

1. 선거비용 보전 상한선 제시

기획·도안료 등 시중의 통상거래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후보자별·지역별로 보전청구액의 편차가 큰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그 비용보전의 상한액을 미리 정하여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그 금액범위 안에서 보전하도록 함.

2.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 대한 기탁금·보전비용 환수

공직선거 당선인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 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반환받은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 상기 선거범죄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 피선거권 상실 또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무효로 된 자

○ 임기중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함으로써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제공한 자(다만,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

절차사무 등의 합리적 개선

1. 선거인명부·후보자등록 분야

가. 선거인명부의 인터넷 열람제도 도입

유명무실한 통·리 단위의 선거인명부 공람제도를 폐지하고 구·시·읍·면사무소나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체납 증명서 제출 범위 조정

○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재산신고 대상과 마찬가지로 납세·체납증명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증명서는 증명서류의 확보가 번잡하고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시기 조정 등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발송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후보자등록시 이에 대하여 추가·보완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중 허위사실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선거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2. 투표 분야

가. 투표용지 작성방법 개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대신 선거구위원회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나. 투표용지 인쇄 등에 정당추천위원 입회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정당이 지명하는 정당대리인이 참여 입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선거기간 중 상근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 입회로 대체하도록 함.

다. 거소투표에 한하여 속봉투 사용

부재자투·개표 절차를 번잡하게 하고 지체시키는 부재자투표 속봉투는 거소투표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송용 겉봉투의 주소·성명 기재사항을 바코드로 대체하도록 함.

라. 동시선거시 정당선정 투표참관인수 축소

동시선거에 있어 신고율이 낮은 정당선정 투표참관인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도록 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관인 정수확보를 보다 용이하도록 함.

마. 투표함 등의 봉인절차 간소화

투표종료후 투표함 등 투표관계서류를 출석위원 전원이 봉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원장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하면 되도록 함.

3. 개표 분야

가.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읍·면·동단위 개표 허용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도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를 읍·면·동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나. 집계사무 담당 개표사무원 자격제한 폐지

개표집계사무를 법원공무원과 교직원 및 금융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표사무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폐지함.

다. 중복기표된 투표의 무효범위 축소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표를 줄이기 위하여 정당·후보자란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유효로 하도록 함.

4. 기타 분야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보도심의, 선거기사심의, 반론보도, 정정보도, 신문광고,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인터넷언론사 관련규정을 정비함.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직권심의 근거 명확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다. 예비후보자 관련 등록무효규정 보완

예비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제한 행위의 합리적 조정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중 직무상의 행위를 제외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구호적·자선적 행위, 의례적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선거실시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3항의 제한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선심행정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의 복지증진행위를 삭제하도록 함.

마. 공소시효 규정 보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대표자가 선거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공선법위반의 죄를 범한 경우 제268조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범죄후 최초로 실시되는 같은 종류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 6월에, 정당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범죄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 6월에 공소시효가 완성하도록 하고,

○ 또한 이들을 위하여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규정된 자들이 하는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공소시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바. 선거관리사제도 도입

○ 정당이나 후보자의 각종 신고·보고·제출 등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거·정당·정치자금사무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정당·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사가 그 사무처리를 확인(공증)·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사에게 인쇄물 발송, 투·개표사무 지원 등 선거사무와 정당·정치자금사무의 일부를 대행시킬수 있도록 하되,

○ 선거관리사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며,

○ 선거관리사의 자격시험, 선거관리사업의 등록, 대행선거사무의 범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위장전입 기간 삭제

위장전입자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로 하여 그 전입제한기간(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3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을 삭제하도록 함.

② 정 당 법

정책 정당으로의 발전지원

1. 정당의 정책토론회 의무화

정당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영방송을 이용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간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0일전까지 연간 1회이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최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함.

2.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 공개

정당의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연간 활동실적과 연구성과 등 구체적인 실적을 백서로 발간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3.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수의 합리적 조정

시·도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가 시·도의 크기에 관계없이 5명이내로 획일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도당에 구·시·군단위 하

부조직을 둘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수를 4로 나눈 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봄)에 상당하는 수이내로 확대 조정하되, 최소 5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서울:7명(25), 경기:11명(41), 전남:6명(22), 경북:6명(24)

※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때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할 경우

⇒ 서울:12명(48), 경기:14명(53), 전남:6명(23), 경북:7명(25)

정당사무절차 등의 합리적 개선

1. 경선불복자의 입후보 금지규정의 명확화

○ 당내 경선에 낙선한 후보자의 경우 당해 공직선거의 모든 선거구에 입후보를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경선에 참여한 해당 선거구에만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

○ 당내경선이 낙선자가 승복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러지고 있으므로 확정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는 당헌·당규로 정한 경선으로 하는 등 그 의미를 명확히 함.

2. 정당사무절차의 합리적 개선

○ 입당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당신청서 작성시 서명날인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당 사무소외에는 당원간의 연락 기타 정당의 사무를 보기 위한 시·도당 내부의 하부조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기타 당원명부·탈당원명부의 통합 등 대장관리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

3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치자금 조달의 활성화

1.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하여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 모금상한액은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예비후보자로서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함.

2.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

○ 소액정치자금 기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회 10만원 이내,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 현금영수증, 전자결재영수증 등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증빙하는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은 후원회가 발급하여 보관 관리하도록 하며,

○ 1만원 이하의 당비·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기부를 증빙하는 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연간기부총액을 기재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정치자금 기탁촉진을 위한 홍보 의무 부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이나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

1. 당비납부 상한제도 도입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한 고액당비 납부를 방지하고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당비·특별당비 등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1인이 월 1,000만원, 연간 6,0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회원의 연간 기부・납부한도액 : 2,000만원

선관위 기탁 한도액 : 1억원

2. 회계보고내역 공개방법의 다양화

현행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있으나, 동 내역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총괄표 및 지출증빙서류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등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3. 기탁금 반환금과 보전비용의 사적 사용규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금으로 기부받거나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일후 이를 반환·보전받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이므로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후원회 기부금과 정당의 지원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함.

-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당에 인계하고
-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고
- 후원회를 둔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여 정치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후원회 해산 등의 경우 잔여재산의 합리적 처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때의 후원회의 잔여재산과 지정권자가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지정권자가 정당소속인 경우에는 정당에, 무소속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 등에 인계하도록 함.

5. 후원금의 사용용도 제한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은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함.

6. 정당의 정치자금 지출의 통제강화

정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 외에 시·도당, 정당의 정책연구소도 구입(지급)품의서를 작성한 후 구입(지급)하도록 함.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

1. 경상보조금의 당비 연동제 도입

경상보조금의 계상과 배분방법은 현행대로 하되, 경상보조금은 당해 정당의 전년도 당비납부총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2. 정책연구소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지급방법 개선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을 정기적·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액으로 배분받아 정책연구소에 지급(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지급하도록 함.

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의무화 등

소속 정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정당선거사무소 포함)는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당에 반환하도록 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정당선거사무소 포함)가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

4. 경상보조금 등의 사용용도 확대

경상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의 선거관련경비지출을 금지한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상보조금·여성추천보조금도 필요하다면 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사무절차의 합리적 개선

1.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의 개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의 자격 및 선임·신고, 회계장부 기재, 회계서류의 보존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함.

2. 기탁금,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명확화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도록 하되, 기탁금은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정치자금 사무절차의 합리적 개선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임기개시전이라도 후원금을 모금하여 당선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가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을 하는 경우 광고횟수 산정방법이 불명확하므로 정기간행물에 분기 4회의 범위안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하여 광고횟수를 명확히 함.

○ 후원회는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지정권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기능으로 하여 설치되는 기구이므로 후원금의 모금을 대신하여 차입금으로 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기탁내역을 공고하는 때에는 현행 모든 기탁자의 명단을 공고하는 것을 개선하여 50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탁자에 한하여 그 명단을 공고하도록 함.